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5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진성준·허 영·위성곤

유동수 · 김현정 · 송재봉

정준호 · 강선우 · 주철현

이학영 • 정을호 • 강훈식

박희승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한다),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는 해당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국가기본계

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 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 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 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 조제6항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

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제11조제2항·제3항을"을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u>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u>
	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u>야 한다.</u>
<u>⑥</u> 제2항부터 <u>제5항</u> 까지의 규	<u>⑦</u> <u>제6항</u>
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

③ (생략)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7 ①·② (생 략)

<u><신</u>설>

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 </u>		
<u>원활한 업무수행</u>		
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u>⑥</u> 제4항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3 \sim 5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 치되지 아니한 경우 <u>제11조제3</u> 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⑦</u> <u>제6항</u>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2항
<u>부터 4항까지를</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제11</u> 조제 <u>4항</u>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	
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	
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u>.</u>